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기간 완화〉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49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이사회 결의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3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 자회사 임직원 추가	9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제한기간 단축	11
※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3.
3. 회부연월일 : 2026.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 요건 및 부여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장기간의 행사 제한기간 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성과연동형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에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 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 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재직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1항).

Ⅲ. 검토의견

1. 이사회 결의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4 및 제16조의6제1항)

개정안은 기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었던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정관으로 정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며 정관기재사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의 자격요건과 행사기간을 삭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u>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u> 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 ----- ----- <u>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u> 를 부여할 총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서 <u>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u>

② ~ ⑤ (생략)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생략)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

수 있다.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총 한도

<삭제>

<삭제>

3.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이사회의 결의에서는-----
-----.

1. ~ 4. (현행과 같음)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

-----제16조의4제

<u>항과 제3항에</u>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u>2항에</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행
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회사의 성장을 주식 소유의 형태로 임직원 등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식에 근거한 보상(stock-based compensation)의 특징을 가지며 주
식을 소유한 임직원 등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성과에 연동하여 부여하는 보
상(performance-based compensation)의 특징 또한 가짐¹⁾.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
으로 상승하였을 때에만 이 권리를 행사하여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
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회사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1)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2024.7.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임직원에게 장기인센티브 보수제도로써의 장점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²⁾.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에 일반주식회사와 상장회사로 구분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상장기업은 15%)로 부여할 수 있는 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외에 외부 전문가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여한도도 발행주식 총수 50% 이내로 발행할 수 있는 등 부여대상, 부여한도 등에서 「상법」에서 정한 요건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³⁾, 미국 델라웨어주⁴⁾의 경우 향후 몇 년

2)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23판, 박영사, 2020, p.81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기업친화적 법적·제도적 환경에 따라 절대다수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은 비즈니스는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법인은 델라웨어주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Delaware’s Status as the Favored Corporate Home: Reflections and Consideration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2024.5.)

간 사용할 전체 옵션풀(Option Pool)⁵⁾의 한도를 주주간 합의(주주간 계약)로 정하고 구체적인 개별 부여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비교

구 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제16조의3~6	제340조의2~4	제542조의3
적용 대상	비상장벤처기업	주식회사	- 상장 주식회사 *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부여 대상	- 임·직원 - 인수(총 주식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외부 전문가	- 임·직원 *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임·직원 - 관계회사의 임·직원
부여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50%이내 - 외부전문가는 10% 이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
행사 가격	(신주발행)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단, 임직원에 한하여 시가 미만 권면액 이상 금액 가능 (자기주식) 시가 이상	(신주발행) 부여일 기준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 시가 이상	
세제 혜택	(비과세특례) 행사이익 연간 2억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 「조특법」 제16조의2 (납부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 분할 납부 가능 * 「조특법」 제16조의3 (과세특례) 3년간 행사가액이 합계 5억원 이하일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선택 가능 * 「조특법」 제16조의4	-	(비과세특례)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적용 (납부특례) 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5) 옵션풀(Option Pool)이란 회사가 향후 임직원·경영진·자문역 등에게 부여할 스톡옵션을 위해, 정관이나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미리 설정해 두는 일정 비율의 주식 물량을 말하며, 아직 특정 개인에게 배정되지 않은 미발행 주식 또는 신주 발행 여력을 의미함.

개정안에 따라 벤처기업은 핵심 인재의 채용 및 유지를 위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수시로 부여할 수 있게 되므로 인재 확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보상전략 수립 및 실행이 신속·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반복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했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 완화와 함께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스톡옵션의 수시 부여 허용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주주총회를 통한 사전통제와 정보공유가 생략됨에 따라 경영진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함에 따라 기업이 인재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기재사항에 스톡옵션 부여자의 자격요건과 행사기간은 존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안 제16조의4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부여

받을 자, 부여방법, 행사기간, 행사가액과 함께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⁶⁾, 현행법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에 따라 액면분할·병합, 무상증자, 합병 등으로 인해 주가가 변동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유연하게 스톡옵션 보유자의 행사이익을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핵심인재에 대한 보상 실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본거래 등으로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변동될 때, 기존 주주와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 자회사 임직원 추가(안 제16조의3제1항제2의2호 신설)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음.

6)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u>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u>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 -----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총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서 <u>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이사회</u>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데⁷⁾, 개정안에 따라 벤처기업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해지므로 모회사가 직접 보상하기 어려운 해외법인 등 완전자회사 우수인재 확보와 보상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회사와 자회사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벤처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성장은 벤처기업의 성장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제한기간 단축(안 제16조의5제1항)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에 대해 이를 부여하기로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하는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있음.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경우 핵심인재에 대한 보상실행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므로 빠른 성과창출에 대한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장 초기 단계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

의 인센티브 제공 수단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제한기간 단축은 인재가 보상을 조기에 실현한 이후 조직을 이탈할 유인도 확대될 수 있는 점, 특히 기업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옵션 부여·행사 이후 단기 이직을 통한 이익 실현 행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는 조직 내 인력 안정성, 중장기적 기술 축적 및 노하우의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미국 실리콘밸리는 옵션행사와 관련하여 법적 강제보다는 시장관행(Standard Practice)에 따라 계약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옵션행사 제한기간(Cliff⁸⁾)을 1년으로 설정하고 옵션행사 제한기간 도과시점에 옵션의 권리를 전부 확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심인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기간이 지난 시점에 일부 옵션을 확정하고 이후 남은 물량을 균등하게 나누어 권리를 확정하는 베스팅(Vesting)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음.

8) 스톡옵션에서 Cliff는 최초 Vesting(권리가 실제로 부여·행사 가능해지는 것)이 발생하기까지의 유예기간으로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재직하더라도 Vesting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Cliff가 끝나는 시점에 일정 비율의 옵션이 한꺼번에 Vesting 되면서 행사 가능한 수량이 절벽처럼 급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인력유인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59

[참고자료]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주식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이익 발생

*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정해진, 향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가격 (통상 부여일 시가)

- 상법상 스톡옵션 대비 부여 대상 및 한도 측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우수 기술인재 확보 및 장기 재직 유도에 유리

* 국내 스톡옵션 도입연도 : 상장회사('97년), 비상장 벤처기업('98년), 일반 주식회사('99년)

<참고 :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제도>

구분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기업종류	비상장 벤처기업	일반 주식회사
부여대상	■ 임직원 ■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외부 전문가	■ 임직원 (상장회사는 출자회사 등 임직원도 가능)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 (상장회사는 15%)
행사가격하한	■ (신주발행) 시가와 권면액 중 고액 (단 신주발행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시가 미만 권면액 이상으로 설정 가능) ■ (자기주식) 시가 이상	■ (신주발행) 시가와 권면액 중 고액 ■ (자기주식) 실질가액 이상
세제혜택	■ 비과세 특례 행사이익 연간 2억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누적 한도는 기업별 최대 5억원)	■ 비과세 특례 좌동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한정)
	■ 분할납부 특례 행사이익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 분할납부 특례 좌동 (상장 벤처기업 한정)
	■ 과세이연 특례 적격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즉시 과세하는 대신 매도 시점 양도소득세 납부로 선택 *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 5억원 이하	-

* 행사 제한기한은 2년으로 동일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절차

- (절차) ①부여 → ②행사(주식매수) → 주식 보유 → ③양도(주식 매도)의 3단계를 거치며, 일반적으로 행사와 양도 단계에 모두 세금부과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대상, 부여방법, 행사가격(부여가격), 행사기간 등 결정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

②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

③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

< 부여시점, 행사시점, 양도시점의 의미 >

- ▶ **부여시점** : 계약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시점
- ▶ **행사시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주식을 실제 소유하게 된 시점)
- ▶ **양도시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추후 시장에 매각하는 시점

* 행사시점과 양도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

* 부여시점, 행사시점, 양도시점은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및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의 소득 귀속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임

- (과세) 행사단계에서는 행사이익을 임금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행사 단계에서 임직원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세로 부과

< 한국과 미국간 스톡옵션 제도 비교 >

구분	한국	미국
부여 한도	■ 「벤처기업법」 상 총 주식수의 50%까지 부여 가능하며, 그 범위 안에서 정관 변경으로 부여 한도를 정할 수 있음 (=주주총회 특별결의)	■ 델라웨어 회사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총 부여한도 제한은 없으며, 스톡옵션 부여 한도(Option Pool)는 주주간 합의(주주간계약)로 정함
한도내 부여	■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결정 사항